

# 대만 개인정보보호 법 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 1. 법률체계

#### ▶ 개요

• 대만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두 개의 법을 중심으로 함

# ▶ 헌법(中華民國憲法)

- 대만 헌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22조에서 '국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인의 기본권을 헌법에서 폭넓게 보장
- 대만 사법원도 '개인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목적 외 제공'과 관련한 '22년 헌법 결정1)에서, 헌법 제22조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근거 규정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헌법 제22조에 근거한다고 판시

#### ▶ 개인정보보호법(個人資料保護法)

- 대만은 최초 특정분야의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컴퓨터 처리 분야에 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및 시행해 왔으나,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규율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넓힌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발전
  - '95년 8월, 대만은 컴퓨터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기 위해 컴퓨터처리 개인 정보보호법(電腦處理個人資料保護法)을 제정하여, 약 15년 간 동 법률을 컴퓨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공유행위에 제한적으로 적용
  - 그러나 정보기술의 끊임없는 발전과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으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기존 법령으로는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면서 '10년 4월 입법원(立法院)의이 컴퓨터처리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재명명하고 적용대상을 넓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
  - '10년 5월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률은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에 이름
- 1) 111年憲判字第13號. https://cons.judicial.gov.tw/docdata.aspx?fid=38&id=309956
- 2) 대만의 입법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



- 이후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15년 12월 15일 일부개정을 거쳐 '16년 3월 15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활용 등을 금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
-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6장 5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기관(公務機關)³)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이용 ▲제3장 민간기관 (非公務機關)⁴)의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이용 ▲제4장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으로 구성

#### 2. 행정체계

#### I. 개요

#### ▶ 대만은 별도의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부처가 그 역할을 대신 담당

- 대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감독하는 독립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법무부에 동법의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세부규칙을 제정하는 역할과,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의 유형과 구체적인 목적 등을 정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이 참조 및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 (제53조 및 제55조)
- 실질적으로는 행정원(行政院)5)의 위임에 따라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6)가 법무부를 대신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감독 권한은 미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산업별 관할부처 및 지방자치정부가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조항(제8조 또는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 등)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보유 (제48조)
- 한편, 대만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 대응해 '18년 7월 국가발전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보호특별사무실(個人資料保護專案辦公室)을 설립해, 대만 내 GDPR과 관련해 다양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조율하고 EU의 적정성 결정을 통과하기 위해 EU와 교섭하는 역할을 부여
  -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www.ndc.gov.tw)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Q&A와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전달 중

<sup>3)</sup>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중앙 또는 지방의 기관 또는 행정법인 (제2조제7호)

<sup>4)</sup> 공공기관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제2조제8호)

<sup>5)</sup> 대만 행정부 기관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며, 정부부처 및 국가 위원회 등이 모두 행정원 소속으로 되어 있음

<sup>6)</sup> 행정원 소속 위원회로 국가발전계획, 조정, 심의, 자원배분 등을 관장하는 최고 주무기관



- ▶ 그러나, '22년 사법원의 헌법결정에서 해당 결정일 기준 3년 내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입법원도 헌법결정에 상응하는 개정법률안을 통과함으로써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
- 사법원(司法院)<sup>7)</sup>은 의료 개인정보의 학술적 활용에 관한 '22년 헌법결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해 조직적, 절차적으로 필요한 조치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 메커니즘은 중요한 핵심 시스템임에도, 독립적 감독기관이 흠결되어 (부재하여) 있는 점은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것이라고 위헌 결정
- 이를 토대로 '23년 4월 행정원은 개인정보 감독기관 설립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sup>9)10)</sup>을 입법원에 제출했으며, 입법원은 '23년 5월 해당 법안을 일부 수정한 개정 법률안을 가결('23.5.16.)<sup>11)</sup>
  - 동 개정 법률안은 '23년 5월 31일 공포되었으며, 개정 법률의 최종 시행일은 현재 미정
- 2023년 12월 5일 PDPC 준비 사무소가 공식적으로 설립됨. 2025년 8월경 PDPC 공식 운영 시작 예상. 현재 38명의 직원으로 구성, 향후 89명까지 확대 계획12)
- 개정 법률에 따라, 신설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個人資料保護委員會)'라는 명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 담당하게 되고, 해당 기관의 조직 구성은 독립감독기관 (獨立監督機關)으로서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 법률로 정하게 됨
- 3. 개인정보 처리자 의무사항
- I. 데이터 컨트롤러
- ▶ (정보주체 권리강화)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구체적으로 각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의무를 제8조 이하에서 자세히 규정
- 동법 제3조에서는 정보주체가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반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규정

<sup>7)</sup>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대만의 정부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일부 행정부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 민사 및 형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법률 및 명령 해석 등을 두루 수행 (헌법소송법 제1조)

<sup>8) 111</sup>年憲判字第13號. https://cons.judicial.gov.tw/docdata.aspx?fid=38&id=309956

<sup>9)</sup> https://www.ey.gov.tw/File/7C397E1D5B80CFD4?A=C

<sup>10)</sup> https://www.ndc.gov.tw/News\_Content7.aspx?n=3E6699ADB0BE3855&s=6B66C26B9454C0D3

<sup>11)</sup> https://www.ndc.gov.tw/News Content7.aspx?n=3E6699ADB0BE3855&sms=C7BF44606A5BF73F&s=8CDE4D6B57ECBB8E

<sup>12)</sup> https://topics.amcham.com.tw/2024/05/preparing-taiwans-data-protection-agency/



- 이후, 제8조에서부터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각 권리 행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
- 다만, 동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제한권, 이동권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권리 및 조항	의무사항 세부 내용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8조 제9조	의무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은 동법 제15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이용) 또는 제19조(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이용)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함 (제8조)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명칭 ▲수집 목적 ▲수집할 개인정보의 범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간,지역,제공받는 자 및 방법 ▲제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은 동법 제15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이용) 또는 제19조(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사용)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가 제공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정보를 알려야 함 (제9조)  - ▲해당 정보의 출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명칭 ▲수집 목적 ▲수집할 개인정보의 범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간,지역,제공받는 자 및 방법 ▲제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이러한 권리는 계약상 사전에 포기되거나 제한될 수 없음 -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제3조제1호)  - 개인정보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3조제2호)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은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질의에 회신하거나,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고사본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함(제10조)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요청을 수락할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함 (제13조제1항)  - 한편,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해 질의를 받거나 검토 또는 개인정보 사본을 요청받을 경우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제14조)			
열람권 제3조제1호 ~제2호,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정정권 제3조제3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ul> <li>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계약상 사전에 포기되거나 제한될 수 없음</li> <li>개인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 (제3조제3호)</li> <li>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보완하여야 함 (제11조제1항)</li> </ul>			

#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행정 체계 현황



권리 및 조항	의무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제11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을 수락할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함 (제13조제2항)				
삭제권 제3조제5호, 제11조제3항~ 제4항, 제13조제2항	<ul> <li>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계약상 사전에 포기되거나 제한될 수 없음</li> <li>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 (제3조제5호)</li> <li>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은 정보 수집의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혹은 이용을 중단해야 함 (제11조제3항)</li> <li>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또는 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을 중단해야 함 (제11조제4항)</li> <li>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제11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을 수락할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함 (제13조제2항)</li> </ul>				
반대권 제3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4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ul> <li>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계약상 사전에 포기되거나 제한될 수 없음</li> <li>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중단을 요구할 권리 (제3조제4호)</li> <li>개인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은 자체적으로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또는 이용을 중단해야 함 (제11조제2항)</li> <li>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은 정보 수집의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혹은 이용을 중단해야 함 (제11조제3항)</li> <li>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또는 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을 중단해야 함 (제11조제4항)</li> <li>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제11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을 수락할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함 (제13조제2항)</li> <li>민간기관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그러한 이용에 반대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li> </ul>				



권리 및 조항	의무사항 세부 내용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함 (제20조제2항)			

- ▶ (컨트롤러 의무사항)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나누어 각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이용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시
- 동법은 제2장(제15조~제18조)에서 공공기관의 의무, 제3장(제19조~제27조)에서 민간기관의 의무를 규정
- 다만, EU GDPR에서 규정하는 컨트롤러의 의무와 비교 시, 공공기관의 의무 가운데에는 DPO 지정의무와 비슷한 '전담직원 지정' 의무, 민간기관의 의무 가운데에는 '적절한 보안 조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처리활동 기록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등은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의무 및 조항	의무사항 세부 내용			
	<ul> <li>성공기관&gt;</li> <li>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또는 처리는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함 (제15조)</li> <li>법적 의무 수행이 필요한 범위 이내인 경우</li> <li>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li> <li>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경우</li> </ul>			
수집 및 처리 관련 의무 제15조 제19조	<ul> <li>&lt;민간기관&gt;</li> <li>●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또는 처리는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함(제19조).</li> <li>-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li> <li>- 민간기관과 정보주체 간에 계약관계 또는 계약에 준하는 관계가 있고 정보주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가 취해진 경우</li> <li>-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에 의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합법적으로 공개된 경우</li> <li>- 공익에 입각한 통계 또는 학술연구를 위해 학술연구기관이 필요로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가공함으로써 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가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li> <li>-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li> </ul>			



의무 및 조항	의무사항 세부 내용				
	-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얻어진 경우. 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또는 이용을 금지할 중요한 이익을				
	가지지 않아야 함				
	-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이용 시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수집목적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제16조)				
	-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가안전 보장 또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타인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물리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공공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공익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가공함으로써				
	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가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이용 관련	_				
의무	· · · · · · · · · · · · · · · · · · ·				
제16조	-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제20조	- 011/1/1 0-10 07				
	<민간기관>				
	• 민간기관은 특정 수집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제20조)				
	   -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타인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한 물리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공공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공익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가공함으로써				
	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가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의무 및 조항	의무사항 세부 내용			
	수 없는 경우 -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 의무 (전담인력 배치 또는 보안조치) 제18조 제27조	<			
	< 민간기관>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민간기관은 개인정보가 도난, 변조, 훼손,			
	분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함 (제27조) -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은 특정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를 위한 안전 및 유지계획과 사업 종료 시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田.** 데이터 프로세서

- ▶ 개인정보보호법은 '프로세서' 라는 용어와 비슷한 개념으로 위탁기관(委託機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위탁기관에 대해 별도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지는 않음
- 동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또는 이용을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으로 본다고 규정
- 그러나, 위탁업무를 부여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내부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률적 의무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벌규정 또한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4. 행정처분 법적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기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중앙정부 등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
- 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시·자치주 정부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아래와

####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행정 체계 현황



같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25조)

-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 금지 ▲처리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의 몰수 또는 파기 ▲민간기관의 위반행위 사실과 민간기관의 명칭, 해당 책임자/대표의 성명 공개
- ▶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제41조~제50조)에서는 위반행위자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
-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로 기존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 제기됨에 따라 주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법을 2023년 5월 31일부터 공포 및 즉시 시행

# ▶ 주요 처벌 강화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위반 시(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안 조치를 채택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파일 보안 유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민간 기관) 과징금 상향 조정:
- 기존: 2만~20만 대만달러 (약 84만 원~840만 원)
- 개정: 2만~200만 대만달러 (약 84만 원~8,400만 원)
-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추가 과징금:
- 15만~1,500만 대만달러 (약 630만 원~6억 3,000만 원)
-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즉시 15만~1,50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 부과 가능하고 명시된 기간 내에 시정을 요구함

#### ▶ 처벌 절차 변경

- 기존: 필요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
- 개정: 위반 즉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동시 가능

조항	세부 내용			
제41조 민감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수집, 처리, 이용	<ul> <li>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 또는 타인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반하거나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에 관련된 명령이나 결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100만 대만달러(약 4,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li> <li>제6조제1항 (민감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금지 의무)</li> <li>제15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또는 처리와 관련한 의무)</li> <li>제1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의무)</li> <li>제19조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또는 처리와 관련한 의무)</li> <li>제20조제1항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의무)</li> <li>동 조항은 대만 국민이 대만 영토 밖에서 다른 대만 국민을 대상으로</li> </ul>			

#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행정 체계 현황



조항	세부 내용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 (제43조)			
제42조 개인정보 파일의 불법 변경 및 삭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 또는 타인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불법적으로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파일의 정확성을 기타 방식으로 손상함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하고 1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 동 조항은 대만 국민이 대만 영토 밖에서 다른 대만 국민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 (제43조)			
제44조 공무원 가중처벌	• 공무원이 그 직위에서 권력, 기회 또는 수단을 남용하여 이 장(章)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을 가중			
제45조 친고죄	• 이 장의 죄는 친고죄 <sup>13)</sup> 에 해당하지만, 제4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제42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46조 타 법률과의 관계	• 이 장의 죄를 범하였으나 다른 법률에 더욱 무거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따름			
제47조 민간기관의 민감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 부적절한 수집, 처리, 이용	-   - 이상 50만 이하 내만달러(약 210만원 이상 2.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48조 민간기관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또는 보안 의무 위반	민간기관의- 제8조 또는 제9조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성보주체 권리- 제10조~제13조 (열람권·정정권·삭제권에 수반한 의무, 침해사고 발생 시점 모든침해 또는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보안 의무-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직접 마케팅에 관한 반대권 행사에 수반한 의무			



조항	세부 내용	
	지방자치·시·자치주 정부는 2만 이상 200만 이하 대만달러(약 84만원이상 8,4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기한 내에시정하도록 명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5만 이상 1,500만이하 대만달러(약 630만원이상 6억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제48조제2항) <'23.5.31. 공포, 시행일미정>  민간기관이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않음과 동시에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앙정부기관 또는 관계지방자치·시·자치주 정부는 15만이상 1,500만이하 대만달러(약 630만원이상 6억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기한 내에시정하도록 명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시마다연속적으로 벌금을 부과 (제48조제3항) <'23.5.31. 공포, 시행일미정>	
제49조 민간기관의 검사 방해 등	• 민간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법 제22조제4항(중앙정부기관 등의 업무상 출입, 검사, 처분 등에 대한 방해 또는 거부 금지)을 위반한 경우 중앙정부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시·자치주 정부는 2만 이상 20만 이하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제50조 대표자 등에 대한 벌금 병과	• 민간기관이 동법 제47조~제49조 위반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민간기관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기타 대표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예방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	

# ▶ 국가기관(법무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조항, 행정처분 및 권고 사례

- 대만에는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별도의 일원화된 주무당국 없이 산업별 중앙정부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시·자치주 정부가 각각 해당 분야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규정
  - 더불어, 동법에는 민간 기관만을 감독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한 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된 사항이 없어,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독 여부는 각 행정체계 내에서의 지휘감독사항으로 해석<sup>14)</sup>
-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만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내부 지휘감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관련 감독사항의 경우에도 외부로 공개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13)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선제되어야 하는 범죄
- 14) 행정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의결 ('23.4.13., 제3851차 회의) 중 검토 내용 https://www.ey.gov.tw/Page/9277F759E41CCD91/2d6bb590-fa47-435f-818e-c196c25733e0 https://www.ndc.gov.tw/News\_Content7.aspx?n=3E6699ADB0BE3855&s=6B66C26B9454C0D3



#### 5.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서는 민간기관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특정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민간기관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은 다음의 경우 이전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 국제조약 또는 협정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가에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행해지는 경우

#### 6. 피해 구제 체계

#### I. 데이터 컨트롤러

- ▶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 동법은 개인정보 침해 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할 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음
  - 이와 관련, 동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민간기관은 개인정보가 도난, 변경, 손상, 파기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시행해야 하는데, 산업별 담당 중앙부처가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를 위한 보안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과 처분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 산업별 담당 중앙부처가 마련한 기준 및 규정 여부에 따라 각 산업별 민간기관은 안전사고 또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주무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할 수도 있음
-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담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도난, 유출, 변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침해된 경우, 관련 사실이 명확해진 후에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수단으로 통지해야 함 (제12조)
- '적절한 수단'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규범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個人資料保護法施行細則) 제22조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화

- 적절한 수단은 구두, 서면,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또는 정보주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의미
- 단, 통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은 기술적 타당성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고려해 인터넷, 미디어, 기타 적절한 공적 수단을 통해 통지할 수 있음
- 통지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실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한 조치의 내역이 포함 되어야 함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만 이상 20만 이하 대만달러(약 84만원 이상 84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48조)

#### Ⅱ. 정보주체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처리 또는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는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정보주체 권리에 초래하는 기타 침해에 대하여, 그 피해가 자연 재해, 비상사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 아닌 한 책임을 져야함(제28조제1항)
- 민간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처리 또는 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정보주체 권리에 초래하는 기타 침해에 대하여, 그 피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져야 함 (제29조제1항)
- 피해자가 겪는 피해가 비금전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는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제28조제2항)
- 만약 피해자가 실제 피해의 금전적 가치를 증명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피해의 강도에 따라 사건당/인당 500 이상 2만 이하(약 2만 1,000원 이상 84만원 이하) 대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다수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총 배상액은 2억 대만달러 (약 84억 원)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건에 관련된 이익이 2억 대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익의 가치를 그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함(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 배상청구권은 개인정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배상책임자를 확인한 후 2년 이내, 침해 발생 후 5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 (제30조)

#### ▶ 정보주체 다수가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다수의 정보주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단법인이나 자선단체는 20인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서면으로 소송수행권을 위임 받아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제34조)

- 정보주체는 구두변론 종결에 앞서 서면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함
- 일반적으로 해당 재단법인 또는 자선단체는 소송에 관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나, 정보주체는 소송포기, 소송취하 또는 화해 등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음 (제37조)
- 판결이 내려진 후 정보주체가 판결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항소 제기 기한 이전에 소송 위임을 철회하고 직접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8조제1항)
  - 한편, 재단법인 또는 자선단체는 판결 원본 수령 후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항소 여부에 대해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재단법인 또는 자선단체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금에서 필수적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송수행권을 위임한 정보주체에게 배분해야 함 (제39조)

# 7. 개인정보 법제 준수 지원 현황

▶ 대만 정부 또는 국가발전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나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 등을 발행한 이력이 없음

#### 8. 최근 행정처분

- ▶ (민원 접수 및 행정처분 사례 건수) 대만에는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원화된 연례보고서나 통계자료가 별도 공개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해 대만 중앙정부기관 등이 부과한 최근 행정처분 사례는 다음과 같음

대상	처분일시	위반사항 개요	처분내역
허윈모바일		• 보안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 과징금 20만
서비스	'23.2.	* 또는 피우를 분구하지 않음으로까   개인정보 침해 사고 초래	* 되
유한공사		게단이고 급에 서고 고대	네근글디 구피
푸성보험		•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ul><li>과징금 15만</li></ul>
대리인	'22.3.	이용 등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 퍼
유한공사		제공받음	네인걸다 구피



- ▶ 교통통신부,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허윈모바일서비스유한공사(和雲行動服務股份有限公司)에 과징금 부과 ('23.3.)¹5)
  - (사건 개요) 차량공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허윈모바일서비스유한공사(이하 iRent)는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보안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
    - iRent는 보안사고 발생으로 인해 고객 수만 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정보 일부, 생일, 신분증, 연락처, 사진, 서명, 렌터카 정보 등이 유출 당함
    - 해당 사고는 iRent 앱의 로그 파일을 기록하는 내부 임시 데이터베이스에 외부 연결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아, 외부의 사이버공격자가 특정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 교통통신부는 최초 사건 발생 후 조사 직원을 파견하여 사고 원인, 현황, 사후처리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안유지 조치, 예방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의무 수행 여부에 대해 설명 및 근거자료를 요청
    - 그러나, iRent가 일정 기한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으로 총 40만 명에게까지 잠재적인 피해가 미침
    - 교통통신부는 조사 결과 iRent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파일 보안유지 계획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
    - 최종적으로 교통통신부는 iRent가 개인정보 도난, 변조, 훼손, 분실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으며,
    - iRent가 개인정보 파일의 보안유지 계획을 여전히 수립하지 않아 제27조제2항 또한 위반했다고 결론
  - (조치 내용) 교통통신부는 iRent의 상기 조항 위반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20만 대만달러(약 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iRent는 이외에도 별개의 사건으로서, 타이베이시교통국으로부터도 타이베이시 자치규정 위반을 근거로 9만 대만달러(약 37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음
- ▶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계약 체결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푸성보험대리인유한공사(富昇保險代理人股份有限公司)에 대해 과징금 부과 ('22.3.)¹6)
  - (사건 개요) 보험업을 취급하는 푸성보험대리인유한공사(이하 푸성보험)가 까르푸보험중개사

<sup>15)</sup> https://www.motc.gov.tw/ch/app/news\_list/view?module=news&id=14&serno=a57a8562-7523-4f25-a69e-c2c74 cda7777

https://www.bnext.com.tw/article/73974/hota-irent-customer-data-exposed-response-security-information https://news.ltn.com.tw/news/life/breakingnews/4205839

<sup>16)</sup> https://www.fsc.gov.tw/ch/home.jsp?id=131&parentpath=0,2&mcustomize=multimessages\_view.jsp&dataserno=202203170001&dtable=Penalty https://ctee.com.tw/news/insurance/611601.html



(家樂福保險經紀人, 이하 까르푸보험)로부터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취득

- 푸성보험은 까르푸보험과 공동 판촉활동 협약을 체결하면서, 까르푸보험이 발행하는 멤버십카드(好康卡)를 매개로 까르푸보험이 수집한 멤버십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푸성보험은 해당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보험판매를 수행하고자 했는데, 까르푸보험으로부터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멤버십카드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음
- 까르푸 멤버십카드 회원가입 약관에서도, 해당 개인정보를 보험판촉을 위해 까르푸보험에 제공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타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멤버십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특정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라고 판단
-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푸성보험이 멤버십카드 이용자에게 까르푸보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멤버십카드 회원들에게 각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푸성보험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제2항(동의취득 요건), 제19조제1항제5호(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적법요건), 제20조제1항제6호(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시 적법요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결론
- (조치 내용)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푸성보험의 상기 조항 위반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5만 대만달러(약 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9. AI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정책

# ▶ 개요

- 대만은 현재 AI에 직접 적용되는 성문화된 법률이나 법정 규정은 없음
- 다양한 기관에서 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적용을 형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개발 중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AI 기술 R&D 가이드라인'

- '19년 9월 발표, AI를 의료, 교육, 자율주행 등 주요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적 기술로 인식
- 인간 중심 가치(인간의 존엄성, 자유, 기본적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개발(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의 균형), 다양성과 포용성(다양한 관점과 배경 인정, 학제 간 대화 촉진)의 3가지 기본 가치 및 공동선과 복지, 공정성과 비차별, 자율성과 통제, 안전성,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과 소통의 8가지



기본 원칙 제시

# ▶ 행정원의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행정 및 관련 기관 가이드라인'

- '23년 발표, 공공 부문의 생성형 AI 도구 사용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 제공
- 주요 내용
- 생성형 AI로 생성된 정보는 정부 인력의 최종 객관적, 전문적 판단을 받아야 함
- 기밀 공공 업무, 개인 데이터, 비공개 정보를 AI에 제공 금지
- 생성형 AI 정보를 행정 행위나 공공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 금지
- 생성형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함

# ▶ '대만 인공지능(AI) 액션플랜 2.0'

- '23년 6월 발표, '26년까지 대만의 AI 산업 가치를 2,500억 대만 달러(약 76억 2,000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
- 주요 내용
- 인재 개발, 산업 성장, 글로벌 기술 영향력에 초점
- 디지털 부가 AI 평가 센터 설립 예정
- AI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 마련 예정

#### ▶ 금융감독위원회(FSC)의 '금융산업 AI 사용 가이드라인'

- '24년 6월 발표, 금융기관의 AI 사용에 대한 비구속적 행정 지침 제공
- 리스크 기반 평가 프레임워크 도입
- 금융기관은 AI 시스템 사용 시 AI 시스템 사용 목적 및 개인 데이터 민감도, AI 시스템 자율성 수준, AI 시스템의 복잡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구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평가해야 함
-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위험 통제 조치를 실행해야 함 (예: 기록 유지, 승인 프로세스 수립, 감사 또는 평가 실시)
- 제3자 AI 시스템 사용 시 위험 평가, 감독, 책임 분배의 중요성 강조

#### 10. 시사점



- ▶ 대만은 현재 독립적 감독기관의 부재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법원의 위헌결정에 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 감독기관이 설립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사법원은 의료 개인정보의 학술적 활용에 관한 헌법결정에서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흠결을 지적하며 2025년 8월경까지 독립적 감독체계를 수립하도록 결정
  - 입법원도 위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함으로써 대만 최초의 개인정보 감독기관 설립이 예정됨
  - 신설 감독기관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 권리 침해 시 법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 대신 행정청에 해당하는 신설 감독기관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개인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민간기관의 입장에서도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일원화되면서, 각종 의무사항에 대한 질의의 편의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의무사항 준수 측면에서도 일관성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
    - 이는 결국 사업자의 법률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필연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보장 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데이터 흐름, 내외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절차, 보안 조치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강화할 필요 있음
- ▶ 대만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EU와 협의 중으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대비 필요
  - 대만은 EU집행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장벽을 낮추는 적정성 결정을 받기 위해 '18년 말 최초 자체 평가 보고서를 EU에 제출했으며 관련 논의를 '23년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는 상황
  - 대만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가 검토 중으로, '23년 5월 31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도입,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강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강화 등이 개정사항으로 논의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간기관 사업자에 부과하는 법률상 의무는 EU GDPR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으로, 정보주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GDPR의 제정 취지상 대만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업자 의무 도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음
  - 대만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직면해 있는 상황을 적절히 인식하고, 특히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이 있기 전까지 현행법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기를 요망
    -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재차 개정될 경우 사업자 의무 신설 및 추가 도입, 처벌 강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 실제 '23년 5월 법률 일부개정에서도 보안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의 처벌수준이 낮다는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재를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행정 체계 현황



(제48조 개정: 현행 2만 이상 20만 이하 대만달러 벌금 → 개정 최대 15만 이상 1,500만 이하 대만달러(약 630만원 이상 6억 3,000만원 이하) 벌금)

#### ▶ AI 규제 및 가이드라인 발전

- 대만은 AI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은 없으나,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통해 AI 발전 도모
-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AI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향후 '대만 인공지능(AI) 액션플랜 2.0'에 따라 AI 규제 법안 초안 마련 예정이며, AI 평가 센터 설립 등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 AI 기반 서비스 제공 국내 기업들의 대비 필요

#### ▶ 향후 전망

-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추가 개정 가능성이 있음
- 개인정보 영향 평가 도입, 동의 요건 강화 등 논의 중이며, AI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책 발전 지속 예상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AI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예상